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. 9. 12 선고 2017가단95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8. 22.

판결 선고 2017. 9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임야 820m² 중 455/16,170 지분에 관하여 2010. 4. 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효제

별지